

의안번호	2220885
의 퇴 인	이해민의원
회 답 일	2026.10.12.
추 계 번호	26D4364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법무부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,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7,000만원 (연평균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법무부 광고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(안 제23조)	54	54	54	54	54	270	54

주: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광고)	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<u>법무부</u> 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(제3항) - (현행)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둠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(광고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법무부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둘 경우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는 회원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관련 질의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광고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둘 경우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준용함
 - (위원 수) 대한변호사협회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위원은 10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최근 3개년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는 18명이므로, 총 18명의 민간위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함

[표 2]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개최 현황: 2023~2025년

	2023		2024		2025	
	개최 횟수	참여 위원수	개최 횟수	참여 위원수	개최 횟수	참여 위원수
대한변호사협회	9회	18명	7회	18명	7회	18명

자료: 대한변호사협회

- (회의개최 횟수) 회의 개최 횟수는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고려하되, 지방변호사회에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(회의참석 사례금)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¹⁾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추계 결과) 제정안에 따라 법무부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둘 경우,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7,000만원(연평균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법무부 광고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18	18	18	18	18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10	10	10	10	10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30	30	30	30	3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54	54	54	54	54	270	54

주: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·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1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